

1일 언론중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중재위나 시민단체의 법안 내용 중 일부는 국회에서 수용되지 못했는데, 언론중재위측 법안내용 중에는 조정전치주의, 중재위원장의 상임화, 중재위원의 대통령 임명, 선거시기의 반론보도 청구절차 통일 등이 수용되지 않았다. 시민단체의 법안내용 중에는 언론사 정보공개, 선거보도관련 특칙, 언론광고 규제, 언론피해상당소 및 언론피해구제기금 설치, 언론사내 심의기구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은 채택되지 않았다.

3. 언론중재법의 주요 내용

1)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조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제3조), “정보원에 대하여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그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갖는다”고 선언하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언론자유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한편 언론의 공적 책임을 명문화하여 (제4조) 공정성, 객관성,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신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존중, 타인의 명예보호, 공중도덕과 사회윤리 준수, 민주적 여론형성 기여 등을 명시했다.

2) 신설 구제 제도

언론중재법은 언론이 침해할 수 없는 인권격을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로 나열하고 있다. (제5조)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도 명문화했는데,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로 규정했다.³⁾

3)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10조는 “제302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또 민법은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제

사망한 자의 인격권에 대해서도 구제절차를 규정해 사망한 후 30년 이전까지는 유족이 그 구제절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중재법은 소위 옴부즈맨이라고 할 수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를 신설했다. (제6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고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등을 하며, 언론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언론사는 3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언론사의 임원이나 직원에 대한 취업금지 조항(제33조)도 신설되었다.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죄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형집행 종료후 5년, 집행유예 종료후 2년 이전에는 언론사의 임원이 되거나 직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언론중재법상의 강제규정 (고충처리인 임명, 정정보도문 게재, 형법 357조 위반자 취업금지)등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제34조)

3) 중재위원회의 구성 변화

언론중재법은 중재위원의 최대인원을 종전의 80인에서 90인으로 늘렸고, 위원의 추천자격도 약간 변경하여 대한변협이 5분의 1 (정간법에서는 법원행정처장이 5분의2)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고, 언론인 출신은 10년 이상의 경험을 요건으로 두었다. 법관 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중재부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중재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재사건에 중재위원이 관련되는 경우 제척사례를 명시하고, 중재위원 기피신청제도를 만들었다. (제10조)

751조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지만, 그러한 보도가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위법성을 조각하여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해 주었다.

중재위원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사건 당사자가 중재위원의 배우자나 과거 배우자인 경우, 혹은 중재위원의 친족인 경우와 중재위원이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거나, 해당 사건의 원인인 보도 등에 관여한 경우 등이다.

위원회 조직도 법적 근거규정을 갖게 되어, 사무처 설치가 명문화되었고, 위원회 활동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재원도 국고 보조외에 방송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4) 중재 대상의 변화

언론중재법은 중재와 조정을 명확히 구분해서, 언론중재위의 기능이 조정 위주임을 인정하고, 조정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재의 경우는 언론중재법상의 조정절차와 민사소송법상의 조정에 관한 기준(제34조, 35조, 39조, 41-45조)을 준용하도록 했다. 조정에 의한 합의는 재판상의 화해로 인정해 중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한편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할 경우 인정이 되고, 이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제24조)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손해배상 결정도 내릴 수 있게 했다. (제30조) 손해배상은 정정보도 등과는 달리 언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 기능이 종전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다. 우선 정간물에 국한되었던 시정권고 기능이 모든 언론매체로 확대되었다.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하고, 그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해당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

언론중재법은 사실적 주장,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정의를 분명하게 제시해 혼동을 줄이려 시도했다. (제2조) 사실적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정의했고, 정정보도는 “언론의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

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으로, 반론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했고,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제14조)

정간법에서는 산재했던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권의 실익무효 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하거나 위법한 내용일 때, 상업적인 광고만을 목적으로 할 때, 혹은 국가기관의 공공회의나 법원의 재판절차에 근거한 사실보도일 때에는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제15조)

정정보도의 형식도 명문화 하여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그 사실 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하고, TV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도록 했다. (제15조)

5) 중재절차상의 변화

언론중재법은 신청인이 중재부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했다. 조정신청은 언론보도를 안 날로부터 3월 이내 (종전은 1월), 언론보도 후 6월 이내에 해야 하고, 서면 외에도 구술이나 전자우편 등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언론사에 먼저 구제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18조) 추후보도 청구권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이내”로 지정해 역시 종전보다 2월 연장했다.

중재부의 조정절차는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종전에는 1회)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언론사인 피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취지에 따라 정정보도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정간법상의 직권중재와 유사하게 중재부는 직권조정결정을 중재신청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제22조) 조정결과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때, 그리고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했다. (제23조)

그러나 직권중재와 마찬가지로 직권조정에 대해 양방은 7일 이내에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단 직권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이때 피해자가 원고로 상대방인 언론사가 피고가 된다.

중재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법원”은 “중재부”로, “법관”은 “중재위원”으로, “법원서기”는 “중재위원회 직원”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제20조)

조정 신청인은 정정보도청구등과 손해배상청구 상호간의 변경을 포함하여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 이들을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단 종전에는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 중재위를 반드시 거쳐야 했으나 이 조항을 삭제하여, 반론보도 청구도 정정보도와 마찬가지로 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6) 피해구제 소송절차

언론중재법은 언론중재절차 뿐만 아니라 정간법에는 없던 피해구제 소송절차를 새로이 규정했다. 조정신청과 마찬가지로 언론피해구제 소송에서 원고는 법원에 정정 및 반론보도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고, 소송 중에도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청구 상호간에 변경할 수 있다. (제26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정정, 반론, 추후보도 청구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재판하며,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 법원은 정정보도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접수 후 3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며, (제27조) 기타 언론피해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한편 언론사가 중재위의 결정에 따라 이미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의무를 이행했으나, 향후 소송에서 언론사가 승소할 경우, 피신청인은 이미 이행한 정정보도와 취소재판의 보도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및 지면게재 사용료 또는 방송 사용료를 배상해야 한다. (제28조)

4.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및 전망

한편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의 제정에 따라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2005)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정간물법·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을 통합해 피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행의 중재절차를 조정절차로 하고, 중재절차를 새로이 규정

현행 중재절차가 그 실제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에 가까워 법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조정과 중재로 그 절차를 이분화 함으로써 혼란의 여지를 없앴으며 청구인들이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중재대상화를 통한 중재위를 통한 일회적 피해구제 가능

현행은 중재위가 반론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재위가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당사자간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완충장치를 위원회에 둬으로써 언론사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게